



Korean Tax Newsletter

7 May 2026

CONTENTS

세법개정

- 2026년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세무동향

-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6월 30일까지 신고 안내
-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 국세청, 펀드 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안내

예규판례

○ 법원

-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건설·분양한 자회사의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임대보증금 등의 부채가 현재가치 할인평가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사건
- ‘평가기간 경과 후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에 관한 상증세법 시행령 단서의 위임범위 일탈 여부가 문제된 사건
- 국내 미등록 ‘상표권’의 양도대가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양도대가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 조세심판원

-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 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이 보유한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에 따른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금융감독원 감독지침에 따라 감액처리한 쟁점개발비를 즉시상각의제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당초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 행정안전부

-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및 주사무소의 사업용 건축물을 ‘개축’한 부분이 지방세법 제 13 조 제 1 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 국세청

- 조세특례제한법상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의 적용 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의 의미
- 주주 간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의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 여부
-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근거법령을 달리하여 재처분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여부

세법개정

2026년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4월 22일(수)부터 5월 15일(금)까지 23일 동안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6월 1일(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6.4.21.)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 보도자료\(Link\)](#)

■ 지방세기본법 하위법령

- **매립폐기물 관련 과세자료 제출 범위 추가**(영 제 74 조, 규칙 제 49 조 등)
<개정안> 매립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신설('26.7.1. 시행)에 따라 기후부가 보유한 전산 자료를 제출·연계하는 근거 마련

■ 지방세법 하위법령

- **지방소재 법인 사원임대주택 취득 시 종과 기준 차등화**(영 제 28 조의 2)
<개정안> 사원임대주택 취득세 종과 및 주택 수 제외 면적기준 등을 지역별로 차등화
 - (현행) (모든 지역) 60㎡ 이하 주택
 - (개선) 수도권 60㎡ 이하 / 비수도권,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85㎡ 이하
- **주민세 사업소분 건축물의 범위 개선**(영 제 78 조)
<개정안> 주민세 사업소분 건축물의 범위에서 태양에너지 설비를 제외
 - 건축물은 연면적,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만 있는 경우 그 수평투영면적
-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서식 정비**(규칙 제 37 조, 별지 제 37 호)
<개정안> 주민세 사업소분 건축물의 범위 중 기계장치에 대한 개정 사항을 사업소분 신고서식에 반영
 - 과세제외 면적: (현행)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폐기물처리시설 등 + (추가) 태양에너지 설비 수평투영 면적
- **집단에너지사업자 에너지 공급용 토지 등 분리과세 일몰연장**(영 제 102 조)
<개정안> 집단에너지사업자 분리과세 일몰 3년 연장('26년~'28년)
- **한국공항공사의 공항시설용 토지 분리과세 일몰연장 등**(영 제 102 조)
<개정안> 한국공항공사의 공항시설용 토지 분리과세 일몰 3년 연장('26년~'28년)
 - 유사 기관인 인천국제공항공사도 일몰 신설('26~'28년, 3년)
- **지방농수산물공사의 농수산물 유통시설 분리과세 신설**(영 제 102 조)
<개정안> 지방농수산물공사의 도매시장 관리 및 유통사업용 토지 분리과세 신설('26년~'28년)
 - 유사 시설인 농수협의 구판시설용 토지 등도 같은 일몰기한 설정('26~'28년)
- **2026년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설정**(영 제 109 조)
<개정안> 2026년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로 설정

○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폐기물 범위 규정**(영 제 136 조)

<개정안> 매립폐기물 신규 과세('26.7 월~)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과세대상 범위를 규정

- 대상을 사업장 배출 폐기물로 한정하되, 지방정부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폐기물 및 재난 폐기물인 경우 제외

세무동향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6월 30일까지 신고 안내

국세청은 최종모기업의 사업연도가 2024년 12월 31일 종료된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고정 사업장은 올해 6월 30일까지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국세청 보도자료(2026.4.28.)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보도자료\(Link\)](#)

○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첫 신고, 올해 5월 시작

- 최종모기업의 사업연도가 2024년 12월 31일 종료된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고정 사업장은 올해 6월 30일까지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납부를 해야함
 - *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은 2024년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8개월이 되는 날과 올해 6월 30일 중 늦은 날까지 신고·납부 의무 있음

○ 연결매출액 7억 5천만 유로 이상 다국적기업그룹이 적용 대상

-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 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매출액이 7억 5천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임
 - * 2024년 사업연도분의 경우 직전 4개 사업연도인 2020년~2023년 사업연도의 연결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 여부를 판단
- 연결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은 최종모기업 소재지가 국내든 해외든 관계없이 우리나라에 신고 의무가 있으며, 최종모기업이 있는 국가의 글로벌최저한세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대상 그룹의 국내구성기업은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함
 - * 단, 정부기업,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등은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

5 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25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6.6.1.(월)까지(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30.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은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비롯하여 '맞춤형 절세혜택', '세무조사 관련 신고 참고사항'을 최초로 제공하며 국세청의 안내대로 신고한 모두채움 환급대상자에게는 조기에 소득세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국세청 보도자료\(2026.4.29.\)](#)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보도자료\(Link\)](#)

○ 신고기간

- '25 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6.1.(월)까지(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30.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함

○ 국세청,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 확대, 소득세 조기 환급

- 모두채움 대상자를 확대하여 연말정산을 누락한 중도퇴사자, 올해 처음으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1인 유튜버를 포함한 717 만 명에게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하며, 특히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460 만 명에게는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
- 모두채움 환급대상자가 국세청이 제공한 환급신고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법정환급기한(6월 30일) 보다 25일 앞당겨 6월 5일부터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

○ 국세청, 납세자별 개별화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

- 납세자별 세무조사결과를 「세무조사 관련 신고 참고사항」으로 제공
- 세법 규정이 복잡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던 일부 공제·감면 등에 대해 올해 최초로 국세청이 직접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납세자에게 「맞춤형 절세혜택」을 안내

국세청, 펀드 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안내

국세청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펀드를 통한 해외투자 과정에서 외국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 신청을 통해 해당 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국내 펀드를 통해 해외 자산에 투자하여 펀드가 해외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 펀드 투자자가 공제를 신청하면 국내에서 낼 세금에서 세액공제 가능(소득세법 제 57 조의 2)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국세청 보도자료(2026.4.2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보도자료\(Link\)](#)

○ 제도 변경

- 과거에는 '펀드 단계'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운영했으나, 금년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는 공제방식을 합리화하기 위해 '납세자가 직접'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변경됨

○ 신청가능 요건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국내에 설정된 펀드 등**을 통해 해외금융상품·부동산 등 해외자산에 간접투자하여 소득이 발생하고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
 - *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거주자
 - **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부동산간접투자기구(REITs),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 등

○ 신청 방법

- 금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간접투자회사 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함
 - * 확정신고기한: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11호서식 부표 4

예규판례

[법원]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건설·분양한 회사의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임대보증금 등의 부채가 현재가치 할인평가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 두 34604 판결, 파기환송)

■ 쟁점

구 임대주택법상의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건설·분양한 회사의 발행주식 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임대주택 임차인들에 대한 부채를 현재가치 할인평가 대상으로 보는 요건[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시행령 제 58 조 제 2 항, 시행규칙 제 18 조의 2 제 2 항 제 1 호의 해석 및 적용]

■ 사안

원고의 부친이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합병법인이 원고의 부친(60%)과 원고(40%)가 주주인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피고는 합병비율 산정 시 피합병법인의 주식(비상장주식) 가치가 과대평가되었다고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를 재산정하여 원고가 특수관계법인 간 합병으로 이익을 얻은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여 원고가 위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원고는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 산정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는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 13499 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상의 공공건설 임대주택(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을 건설·분양한 회사의 발행주식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임대주택 임차인들로부터 수취한 임대보증금 및 매매예약 합의금(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채')을, 그 부채의 원본 회수기간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 58 조 제 2 항 및 시행규칙 제 18 조의 2 제 2 항 제 1 호 전문에 따른 5년을 초과하는 장기성 부채로 보아 현재가치로 할인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판결요지

(...)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58 조 제 2 항 본문은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위임에 따라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 18 조의 2 제 2 항 제 1 호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58 조 제 2 항 본문에서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관하여,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58 조의 2 제 2 항 제 1 호 (가)목에 따른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이 경우 소득세법 제 94 조 제 1 항 제 4 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아 현재가치로 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법인 등이 부담하는 입회금·보증금 등에 관한 채무가액을 위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으로 산정함으로써 입회금·보증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때 현재가치로 할인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짓는 원본의 회수기간은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채무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도래하는 변제기와 해당 평가기준일 사이의 시간적인 간격에 따라 정하여야 함. 만일 평가기준일 현재 어느 채무의 변제기가 언제일지가 불분명하거나 유동적이어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본의 회수기간 자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 18 조의 2 제 2 항 제 1 호 후문에 따라 해당 채무에 관하여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임을 전제로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55 조 제 1 항 전문에 따른 순자산가액의 평가과정에서 법인의 자산 가액으로부터 차감되어야 할 부채 가액으로 보아야 함

그리고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 18 조의 2 제 2 항 제 1 호 후문에 따라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는 채무는, 소득세법 제 94 조 제 1 항 제 4 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

권과 관련된 채무로 엄격히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위임규정으로서 예시적 성격을 지닌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 규정된 '입회금·보증금 등'에 포섭될 수 있는 장기성 채무 전반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하여 임차인들과 실제 체결된 임대차계약 역시 임대무기간이 10년임을 전제로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표준임대차계약서 제 10조 제 1항과 마찬가지로 임차인들과 사이에 실제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제 10조 제 1항에도 소외 4회사는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 중에 임대차기간을 '최초 입주개시일로부터 2년'으로 정한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임대차기간이 위 2년의 도과로 인해 곧바로 종료되어 임대인인 소외 4회사의 해당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위 임대차계약에는 임대무기간의 1/2(5년)이 경과한 경우 소외 4회사와 임차인이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구 임대주택법이 정한 절차를 완료하면 조기분양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특약사항 제 4조), 소외 4회사는 임차인들과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조기분양전환권에 대한 사전동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예약 합의를 하였음. 그러나 이는 기본적으로 임차인들에게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으로서 소외 4회사가 별도로 지정한 기간 내에 분양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에 불과함. 이에 따라 실제로 조기분양전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임차인들의 분양전환신청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임차인들이 분양전환신청을 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임차인들의 의사에 달려 있음. 따라서 임대인인 소외 4회사로서는 평가기준일인 이 사건 합병일을 기준으로 임차인들이 조기분양전환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임차인들로서는 조기분양전환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임대차계약상 갱신 조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임대무기간의 1/2이 지난 시점에 일률적으로 종료된다고 볼 수 없음 (...)

정리하면, 이 사건 부채는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5년이 지난 시점에 확정적으로 변제기에 이른다고 볼 수 없고, 평가기준일 기준으로 바라보았을 때 임차인들이 향후 조기분양전환신청을 할지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므로, 적어도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 18조의 2 제 2항 제 1호 후문에 따른 5년의 회수기간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할인 평가하여야 한다고 볼 여지가 큼

[법원] '평가기간 경과 후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에 관한 상증세법 시행령 단서의 위임범위 일탈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 두 35499 판결, 상고기각)

■ 쟁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 3327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49 조 제 1 항 단서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7. 18. 법률 제 1956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 60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

■ 사안

원고들이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아 이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평가기간 경과 후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49 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두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을 위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임

판결요지

재산의 평가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이 갖는 가치를 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하는 것을 말함. 구 상증세법 제 60 조는 제 1 항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 2 항에서는 여기서의 시가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이는 입법자가 시가주의에 근접한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입법재량 내에서 사회·경제 현실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도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인 '시가'를 공정하게 산정하기 위한 취지로서, 그 위임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49 조 제 1 항 각 호는 과세대상에 대한 평가의 원칙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나아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49 조 제 1 항 각 호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함(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 두 5098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 두 23200 판결 등 참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 49 조 제 1 항 단서는 객관적 교환가치에 부합하도록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 중에 속한 매매 등의 가액일지라도 이를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요건을 별도로 구체화·명확화하고 있는바, 이 역시 모법인 구 상증세법 제 60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음

[법원] 국내 미등록 '상표권'의 양도대가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2 두 33507 판결, 상고기각)

■ 쟁점

1. 국내 미등록 상표권의 양도대가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 제 14 조 제 4 항 제 b 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한미조세협약 제 16 조 제 1 항의 '자본적 자산'에 상표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사안

내국법인인 원고가 미국 법인으로부터 미국에 등록된 상표권(이하 '이 사건 상표')을 양수하고 피고에게 위 상표권 매매대금(이하 '이 사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세를 납부한 후, 이 사건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납부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판결요지

한미조세협약 제 14 조 제 4 항은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 a 호에서 (...)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제 b 호에서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 중에서 동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각 들고 있음 (...)

한미조세협약의 문언과 체계, 취지 등에 의하면, 한미조세협약 제 14 조 제 4 항 제 b 호에서 말하는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의 통상적인 의미는, 같은 항 제 a 호에서 열거한 상표 등 재산 등을 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함으로써 얻은 소득 중에서도 특별히 ‘그 재산 등의 사용으로 양수인에게 발생할 매출액의 일정 비율’과 같이 장래 일정한 불확정적인 조건의 성취를 전제로 지급을 약정한 ‘조건부 변동대가’만을 가리킴 (...)

한미조세협약 제 14 조 제 4 항이 사용료소득으로 제 a 호에서 ‘상표 등 무형자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규정한 외에 제 b 호를 별도로 마련한 것은, 외형상으로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무형자산 자체의 양도대가일지라도 실질적으로 그 자산의 사용대가와 동일한 성격의 금원 부분 즉, 양도 후 해당 재산 등의 장래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에 한하여는 사용대가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함임

한미조세협약 제 6 조는 소득의 원천 판정 기준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중 제 3 항은 사용료소득의 원천 판정 기준을, 제 7 항은 ‘제 14 조 제 4 항 제 b 호에 의한 사용료로 규정된 이득을 제외하고’ 무형 또는 유형의 개인재산(personal property) 매매로부터 얻는 소득의 원천 판정 기준을 각 정하고 있음. 비록 우리나라 법에는 ‘개인재산’이라는 개념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미국법에서는 위 용어가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가리키는 의미로 쓰이는 것으로 보임. 그런데 만일 한미조세협약 제 14 조 제 4 항 제 a 호에 열거된 재산 등의 양도대가 전부가 제 b 호의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면, 위 재산 등의 매매로 인한 소득은 전부 사용료소득으로 취급되어 제 6 조 제 3 항에 따라 원천이 결정될 것인데, 이러한 결론은 ‘무형 또는 유형의 개인재산 매매로부터 얻는 소득’의 원천 판정 기준에 관하여 제 6 조 제 7 항이 별도로 마련된 협약의 체계와 부합하지 않음 (...)

한미조세협약 제 16 조 제 1 항에 따르면 미국 거주자는 자본적 자산의 매각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됨.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본적 자산’에 관하여 한미조

세협약은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음. 한미조세협약 제 2 조 제 2 항 전문에 따르면, 이처럼 협약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그 조세가 결정되는 우리나라의 법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는데, 우리나라 법 어디에서도 '자본적 자산'(영문본상 capital asset)이라는 개념을 찾을 수 없음. 그렇다면 결국 이러한 '자본적 자산'의 의미는 한미조세협약의 '문맥'(context)에 따라 파악하는 수밖에 없음 (...)

1976 년 한미조세협약 체결 당시 미국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제 1221 조는 '자본적 자산의 정의'(capital asset defined)라는 제목 아래 '자본적 자산이란 납세자가 보유한 다음의 것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의미한다'고 정하면서, 자본적 자산의 개념에서 제외되는 재산으로 '재고자산 또는 납세자가 주로 판매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재산 등(제 1 호), 사업 또는 영업에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제 167 조에 의한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재산 등(제 2 호), 납세자가 창작한 저작권, 문학·음악·미술 창작물 등(제 3 호), 재고자산 등 판매로 인해 취득한 매출채권 등(제 4 호), 미국이나 그 하위 행정 구역 등이 발행한 채무증서(제 5 호)'를 열거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한미조세협약 제 16 조 제 1 항에서 말하는 '자본적 자산'이란 조약 체결 당시의 미국 내국세법 제 1221 조 각 호에 열거된 재산을 제외한 납세자의 모든 재산을 가리킨다고 이해할 수 있음

그리고 1976 년 한미조세협약 체결 당시 미국 내국세법 제 167 조는 감가상각(depreciation)이라는 제목 아래 제 a 항에서 '(1) 사업 또는 영업에 사용되거나 (2) 수익 창출을 위해 보유되는 재산의 소모(exhaustion), 마모(wear), 파손(tear) 또는 진부화(obsolescence)에 관하여 합리적인 감가상각 공제를 허용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상표는 위 제 167 조에 의한 감가상각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상표는 1976 년 한미조세협약 체결 당시 미국 내국세법 제 1221 조 각 호가 정한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시의 미국 내국세법상 '자본적 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한미조세협약 제 16 조 제 1 항 '자본적 자산'의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음 (...)

이 사건 상표는 자본적 자산의 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타방 계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의 면제를 규정한 한미조세협약 제 16 조 제 1 항에 따라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없다고 보아야 함

[법원]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양도대가가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6. 4. 9. 선고 2024 두 65607 판결, 파기환송)

■ 쟁점

1. 투과과세단체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한미조세협약') 제 3 조 제 1 항 제 b 호에 따른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양도대가가 한미조세협약 제 14 조 제 4 항 제 b 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한미조세협약 제 16 조 제 1 항의 '자본적 자산'에 사업에 사용되는 특허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사안

미국법에 따라 설립된 LLC(Limited Liability Company)인 원고들로부터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을 양도받은 내국법인이 원고들에게 그 양도대가(이하 '이 사건 소득')를 지급하면서 이 사건 소득이 한미조세협약 제 14 조 제 4 항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대응한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는데,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소득이 한미조세협약 제 16 조에 따라 국내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거나, 설령 사용료소득이라 하더라도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사용대가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들이 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판결요지

한미조세협약 제 14 조 제 4 항은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 a 호에서 (...)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제 b 호에서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 중에서 동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각 들고 있음 (...)

한미조세협약의 문언과 체계, 취지 등에 의하면, 한미조세협약 제 14 조 제 4 항 제 b 호에서 말하는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의 통상적인 의미는, 같은 항 제 a 호에서 열거한 특허 등 재산 등을 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함으로써 얻은 소득 중에서도 특별히 ‘그 재산 등의 사용으로 양수인에게 발생할 매출액의 일정 비율’과 같이 장래 일정한 불확정적인 조건의 성취를 전제로 지급을 약정한 ‘조건부 변동대가’만을 가리킴 (...)

한미조세협약 제 14 조 제 4 항이 사용료소득으로 제 a 호에서 ‘특허 등 무형자산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규정한 외에 제 b 호를 별도로 마련한 것은, 외형상으로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무형자산 자체의 양도대가일지라도 실질적으로 그 자산의 사용대가와 동일한 성격의 금원 부분 즉, 양도 후 해당 재산 등의 장래 생산성·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에 한하여는 사용대가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함임

한미조세협약 제 6 조는 소득의 원천 판정 기준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중 제 3 항은 사용료소득의 원천 판정 기준을, 제 7 항은 ‘제 14 조 제 4 항 제 b 호에 의한 사용료로 규정된 이득을 제외하고’ 무형 또는 유형의 개인재산(personal property) 매매로부터 얻는 소득의 원천 판정 기준을 각 정하고 있음. 비록 우리나라 법에는 ‘개인재산’이라는 개념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미국법에서는 위 용어가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가리키는 의미로 쓰이는 것으로 보임. 만일 한미조세협약 제 14 조 제 4 항 제 a 호에 열거된 재산 등의 양도대가 전부가 제 b 호의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면, 위 재산 등의 매매로 인한 소득은 전부 사용료소득으로 취급되어 제 6 조 제 3 항에 따라 원천이 결정될 것인바, 이러한 결론은 ‘무형 또는 유형의 개

인재산 매매로부터 얻는 소득'의 원천 판정 기준에 관하여 제 6 조 제 7 항이 별도로 마련된 협약의 체계와 부합하지 않음 (…)

이 사건 특허는 원고들이 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감가상각 공제가 허용되는 재산이라 할 수 있으므로, 한미조세협약 체결 당시의 문맥에 따르면, 한미조세협약 제 16 조 제 1 항의 자본적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특허가 한미조세협약 제 16 조 제 1 항의 자본적 자산에 해당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그 매각으로 인한 이 사건 소득에 관하여 과세가 면제된다고 판단하였음.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한미조세협약 제 16 조 제 1 항의 자본적 자산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한편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미조세협약 제 6 조 제 7 항의 '개인재산'은 그 문맥상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가리키는 의미라 할 것이므로, 여기서의 '무형의 개인재산'에는 이 사건 특허가 포함될 여지가 있고, 실제로 그러하다면 이 사건 소득은 위 조항에 따라 그 특허가 매각되는 장소에 원천을 둔 것으로 취급되어야 함. 따라서 환송 후 원심으로서 이 사건 특허가 한미조세협약 제 6 조 제 7 항의 '무형의 개인재산'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이 사건 특허가 매각된 장소를 우리나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하여야 함을 아울러 지적하여 둠

[조세심판원]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임대업’ 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이 보유한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에 따른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6 서 0195, 2026.3.11., 취소)

■ 쟁점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안

청구법인은 2018.5.4. 수익사업(부동산 임대)을 영위하기 위해 구로세무서장에게 청구법인이 소유한 서울특별시 000 를 사업장으로 하고 주업종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 후, 2021.9.29. 종로구청장에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 2 조 제 7 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고, 2022 년부터 2024 년까지 각 과세연도에 대하여 위 000 건물 중 오피스텔 000 채(이하 “쟁점주택”)를 「종합부동산세법」 제 8 조 제 2 항 제 1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아 합산배제 신고를 하였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거나 정당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하여 청구법인에게 2022~2024 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000 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결정요지

처분청은 이 사건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으로만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주택임대업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어 쟁점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임

그러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업은 그 하위 분류로 주거용 건물 임대업과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등을 하위 분류로 두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업태가 ‘부동산’, 종목이 ‘임대’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청구법인은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관련 수입금액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의무를 미이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임

또한, 국세통합전산망에 등록된 청구법인의 업종코드가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701201)로 등록되어 있기는 하나 해당 업종코드는 경비율 산정 등을 위한 관리 목적의 분류 코드로 보일 뿐 이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정 요건으로 기능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아울러, 이 사건 심리 중 2026.2.27. 대통령령 제 36132 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 3 조 제 1 항은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 168 조 또는 「법인세법」 제 111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완화하였고 같은 영 부칙 제 2 조(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는 위 개정규정이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금융감독원 감독지침에 따라 감액처리한 쟁점개발비를 즉시상각의제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당초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 서 3185, 2026.3.12., 취소)

■ 쟁점

무형자산 계상 후 감액한 쟁점개발비에 대해 즉시상각의제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사안

청구법인은 분자진단시약 개발,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 사업연도까지는 제품개발 1 단계 투자심의 과정을 거쳐 2 단계 제품개발에 착수한 경우, 개발과정에 소요된 비용을 재무제표상 개발비(무형자산)로 계상하고 관련 제품의 판매시점부터 5 년간 상각하였는데, 금융감독원은 2018.9.19.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이하 “2018 년 감독지침”)을 발표하여 개발비의 기술적 실현가능성에 따른 제품개발 유형 및 자산화 가능 단계를 안내하였음

이에 청구법인은 2018 년 감독지침에 따라 2 단계 제품개발에서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 000 원(이하 “쟁점개발비”)을 감액한 후, 처분청에게 2018 년 감독지침에 따라 쟁점개발비를 감액하였으므로, 이는 지출한 사업연도의 당기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으로 산입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였음

금융감독원은 2022.9.22. 제약·바이오 산업 주요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이하 “2022 년 감독지침”)을 발표하여 2018 년 감독지침과 달리 회사가 기술적 실현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3 단계 제품검증 이전에도 자산화가 가능한 것으로 재안내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개발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31 조 제 8 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즉시상각의제 규정에 따라 2018~2021 사업연도에 상각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게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검토한 결과, 쟁점개발비는 최초 인식시점에 개발비의 무형자산 인식요건 중 하나인 ‘기술적인 실현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결정요지

「법인세법」 제 23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1 조에 따르면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상차손으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인바, 처분청은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개발비를 감액하는 등 쟁점개발비는 「법인세법」상 무형자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에 해당하므로, ‘지급사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개발비가 자산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으며 회계감사를 통해 자산화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받았는바, 자산화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오류나 잘못이 없는 이상 쟁점개발비를 지급사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고(조심 2020 인 1804, 2020.9.8., 같은 뜻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였던 쟁점개발비를 청구법인 스스로 오류수정(전기오류수정손실) 회계처리한 것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 년 감독지침으로 인해 개발비에 대한 자산 인식 기준이 상대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쟁점개발비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인식한 결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 처리(쟁점개발비를 감액하는 내용으로 재무제표 수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세법 기본통칙’(23-0...4), 국세청 예규(서면-2019-법령해석법인-1433, 2019. 7.10.) 및 청구법인이 직접 국세청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답변(법규과-2095, 2024.8.22.) 등에서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를 감

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31 조 제 8 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어 청구법인 또한 이를 신뢰하여 종전 경정청구를 취하하고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쟁점개발비가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으로도 산입되지 않는 것은 위법 또는 부당해 보이는 점,

(…) 청구법인이 쟁점개발비를 스스로 감액(오류수정)한 것은 2018 년 감독지침에 따른 것으로, 위 감독지침상 자산화 가능 단계를 3 단계인 제품검증 단계부터로 설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사업상 불이익 등을 회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오류수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2022 년 감독지침은 2018 년 감독지침과 달리 임상 1 상 개시 승인 전 지출이더라도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발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었으며, 매우 높은 확률의 임상 개시 승인 경험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자산화 가능한 것으로 안내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쟁점개발비를 청구법인 스스로 오류수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쟁점개발비가 당초부터 무형자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으로도 산입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행정안전부]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및 주사무소의 사업용 건축물을 ‘개축’한 부분이 지방세법 제 13 조 제 1 항에 따른 취득세 종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933, 2026.3.20.)

■ 질의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사업용으로 신축·증축하는 건축물에 대해 종과세율을 적용하는데, ‘개축’하는 경우도 취득세 종과세율 적용 대상인지

회신

「지방세법」 제 13 조 제 1 항에서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해 종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당초 구 「지방세법」(법률 제 561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 112 조 제 3 항에서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취득세 종과에 대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여 종과대상 취득의 범위에 제한이 없다가, 「지방세법」 개정(법률 제 5615 호, 1998.12.31.)으로 건물의 신축, 증축 그리고 부속토지의 취득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정된 점, 「건축법」 제 2 조 제 1 항 제 8 호에서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개축’을 신축이나 증축과 별개로 구분하고 있는 점, 아울러 개축을 종과세 대상으로 포함하려는 취지라면 「지방세법」 제 16 조 제 2 항의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의 종과세 요건과 같이 ‘개축’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나 과밀억제권역 내 종과에 대해 신축과 증축으로 한정하여 규정한 것과 대비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있음

따라서,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사업용 건축물을 개축한 부분에 대해서는 종과세율이 아닌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상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의 적용 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의 의미

(사전-2024-법규법인-0902, 2026.3.18.)

■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 조의 33 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때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의 의미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OO 산업단지(“쟁점단지”)의 조성공사를 수행하고 있음
- 쟁점단지는 2024 년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었으며, 질의법인은 산업단지계획에 따라 쟁점단지의 조성공사를 진행 중임
- 질의법인은 쟁점단지의 조성공사가 완료된 이후, 공장을 신설할 예정임

회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 2 조 제 13 호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에 2028 년 12 월 31 일까지, 제조업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16 조의 36 제 1 항의 감면대상사업으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기간에 사업장을 신설(사업장 설치를 완료한 경우를 말한다)하는 기업의 경우, 같은 법 제 121 조의 33 제 1 항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국세청] 주주 간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의 감사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 여부

(서면-2025-자본거래-4033, 2026.3.30.)

■ 질의

법인이 대주주(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취득한 자기출자지분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함으로써 대주주가 이익을 얻게 된 경우 상증법 §39의2 【감사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사실관계

- 유한회사 A(이하 '질의법인')의 신청일 현재 출자지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

출자자	출자좌수(좌)	지분율
갑(대표이사)	x,xxx	xx,xx%
유한회사 A(자기출자지분)	xx,xxx	xx,xx%
합계	xx,xxx	100%

- 질의법인이 보유한 자기출자 지분 xx,xxx 좌(이하 '쟁점지분')는 xx.xx.xx. 당시 출자자인 을에게 취득한 것으로 을과 갑은 상증법§2의2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고, 질의법인은 쟁점지분을 모두 소각할 계획으로, 소각시 갑의 지분율은 100%로 상승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39 조의 2 제 1 항 제 1 호에 따라 법인이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2 조의 2 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 조 제 1 항 제 6 호에 따라 같은 항 제 4 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 4 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청]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근거법령을 달리하여 재처분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2025-법규기본-4597, 2026.3.30.)

■ 질의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근거법령을 달리하여 과세관청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 후 재처분하는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여부

■ 사실관계

- 甲은 A 법인의 지배주주(100%)로, A 법인은 계열사인 B 법인과 아파트 분양사업의 시행부분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약정함('15.3 월, 이하 '쟁점사실관계')
- (1 차처분) '20.11 월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관청으로부터 상증세법 제 45 조의 4(일감떼어주기)에 따른 '16~'18 년 증여세 처분('20.11.2., 이하 '1 차처분')받음. 당초 결정 시 상증세법 제 43 조의 특례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 45 조의 4 규정을 우선 적용(상증법§43①)
- (심판청구) 1 차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소급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인 주장이 인용되자 과세관청은 1 차처분을 취소함('23.1.6.)
- (2 차처분) 과세관청은 위 사실관계에 대해 근거법령을 달리하여 상증세법 제 45 조의 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를 재처분(이하 '2 차처분')하고자 함

회신

본건 사실관계와 같이, 당초 과세관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 43 조에 따라 같은 법 제 45 조의 4 를 우선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증여세액이 과세관청의 소급과세에 해당한다는 심판청구의 결정으로 취소하였다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같은 법 제 45 조의 5 로 재경정하는 경우는 당초 경정 고지일의 다음날부터 재경정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를 「국세기본법」 제 48 조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Contacts

상기 내용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을 아래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권지원 Tax & Legal Leader

+82 (2) 6676-2416

jekwon@deloitte.com

김경조 Partner

+82 (2) 6099-4279

kyungjokim@deloitte.com

정호석 회계사

+82 (2) 6099-4734

hosjung@deloitte.com

※ 본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개별적 사안에 대한 적용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80 개 이상 국가의 세금 뉴스 및 정보를 보려면 지금 tax@hand 를 [방문](#)하거나 tax@hand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여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Back to top](#)